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폐기물처리업자의 의제처리규정 적용 대상에 적합성 확인 추가〉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027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폐기물처리업자의 의제처리규정 적용 대상에 적합성 확인 추가	3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27일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는 대신 환경부장관에게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제처리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업종별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의제처리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적합성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제 처리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성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25조제14항, 제15항, 제16항).

Ⅲ. 검토의견

1. 폐기물처리업자의 의제처리규정 적용 대상에 적합성 확인 추가

개정안은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도 적합성 확인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처리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4항제4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⑬ (생략)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⑭ ----- ----- ----- ----- ----- ----- ----- <u>허가·변경허가</u> <u>또는 적합성확인</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제25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⑮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	⑮ ----- -----

통보·허가·<u>변경허가</u>·<u>변경신고</u>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u>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u>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⑯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u>변경허가</u>를 하거나 <u>변경신고</u>를 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⑰ (생략)	-----<u>변경허가·변경신고·적합성확인</u>----- ----- ----- <u>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또는 적합성확인 신청을</u>----- -----. ⑰----- ----- -----<u>변경허가·적합성확인을</u>----- -----. ⑰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25조제14항¹⁾에 따르면 지정폐기물²⁾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①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②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③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서로 각각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⑭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친 경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환경부장관에게만 제출하면 되고, 환경부장관은 관련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사업자에게 회신함.

한편,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 한 번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은 허가가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처리업을 영구히 운영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따라,

2020년 동법 개정³⁾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체는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받아야 하는 ‘적합성확인’ 제도가 도입되었음.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은 하위 법령에서 5년으로 설정되었고, 이에 따라 2025년부터⁴⁾ 사업자는 5년(최대 7년)마다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조건을 갖추고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함.

참고로, 적합성확인 제도가 적용되는 업종 수는 2024년 기준 14,833개로, 적합성확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시설 및 장비 명세서, 직전년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 확인서류 등이 있음.

3) 법률 제16614호, 2019.11.26., 일부개정 (시행 2020.5.27.)

4) 2025.5.26. 시행

[적합성확인 제도 개요]

- (적합성 조건) 폐기물 처리기준·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준수사항 충족*, 처리업체
결격사유 미해당,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책임 이행
 - 시설·장비의 적합성, 처분 또는 재활용과정 적정성 등 기술적 검토사항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한국환경공단)에 검토 의뢰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요건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충족 등 <환경부령> 조건 을 충족 2.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 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가.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 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기준을 충족할 것

- (대상) 14,833개(수집·운반업 7,904개, 소각·매립업 251개, 재활용업 6,678개)
- (절차) 처리업자적합성확인 신청서 제출(만료 3개월전) → 허가기관접수·검토 → 환경공단
기술검토(허가기간 의뢰시) → 허가기관확인 통보
 - 제출서류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보관시설 현장사진, 직전년도 폐기물 반입량·
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 확인서류, 기술능력 보유 현황

자료 : 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적합성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개정안 대상인 안 제 25조제14항의 의제처리규정 대상에 ‘적합성확인의 신청’을 추가하려는 것임.

신규로 도입된 적합성확인 제도에 대하여 의제처리규정을 적용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자의 편의성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등 유사 업무

에 대하여 의제처리규정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 조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6